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개요	3
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정점식의원 안)	6
3. 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정점식의원안)	12

I. 개요

1.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08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4. 3.
- (3) 회 부 일 : 2026. 4.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의 한도는 현실적인 주거비 지출 규모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

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95조의2 개정).

아울러,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¹⁾로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에 지급한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임. 세액공제율은 공제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공제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됨.²⁾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한편,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중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 운용되다가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³⁾, 2017년 세법개정에서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확대가 일부 있었으나, 기본 세액공제율(10%) 및 월세액 한도(750만원)에는 변함이 없었음. 이후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 세액공제율(15%) 및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7%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총급여액 기준이 종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총 월세액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또한, 2025년 세법개정에서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월세액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1,607억원에서 2026년에는 4,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금액	1,607	1,848	3,043	3,663	4,657	4,902

출처: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2015년 말에 일몰되었다가 2018년 정기회 세법개정으로 재도입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24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총 인원은 87만 4,636명, 금액은 총 3,954억 9,000만원으로 나타남.

[2024년 귀속소득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 현황(공제대상)]

구분	결정세액이 있는자	결정세액이 없는자	계
인원 (A)	568,236명	306,400명	874,636명
금액 (B)	299,683백만원	95,807백만원	395,490백만원
1인당 공제액 (B/A)	527,392원	312,686원	452,188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정점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월세액 세액공제(제95조의2) ☐ (대상) 총 급여액 <u>8,000만원</u> (종합소득금액 <u>7,000만원</u>)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 기준시가 4억원 (or 국민주택규모) 이하 ※ 시행령 규정 ☐ (공제한도) <u>1,000만원</u> ☐ (공제율) 월세액 <u>15%</u> - 단, 총 급여액 <u>5,500만원</u> (종합소득금액 <u>4,500만원</u>) 이하 시 <u>17%</u>	☐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대상) 총 급여액 <u>9,000만원</u> (종합소득금액 <u>8,000만원</u>)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u>2,000만원</u> ☐ (공제율) 월세액 <u>20%</u> - 단, 총 급여액 <u>6,500만원</u> (종합소득금액 <u>5,500만원</u>) 이하 시 <u>22%</u>

* 정점식의원안 2026. 4. 3. 발의(의안번호 18081)

☐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현행 총 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을 총 급여액 9,000만원(종합소득금액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공제한도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며, 현행 공제율 15%(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를 20%(총 급여액 6,5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2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우선, ①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현

상이 가속화되고 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 건수 중 월세 비중은 2023년 54.92%에서 2026년 6월 기준 69.22%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월세의 가속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확정일자 부여 건수 중 월세 비중]

(단위: %)

연도	2023	2024	2025	2026.6.
전국	54.92	57.69	63.21	69.22
서울	56.52	60.32	64.67	67.59

주: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건수 대비 월세 비중임

자료: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현재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특례의 총급여액 기준인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는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에서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20이며 2023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약 7.54%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23	2024	2025	2026.1.	2026.6.
소비자물가지수	111.59	114.18	116.61	118.03	120

주: 2020=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다만, 현행 기준이 대다수 근로소득자(약 91.4%⁴⁾)에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산·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수준이라는 의견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 ②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소득·서민가구의 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인 입법취지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월세는 전체 응답자 중 약 15.6%의 비중을 보이는 주거유형으로서,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임차가구의 비중 및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소득 중·하위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임차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4) 2025년 귀속소득 기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926만명이며, 전체 근로소득자는 2,107.9만명 대비 91.4%임(자료: 국세통계포털)

5) 재정경제부 의견임

[가구소득별 점유형태(2025년 기준)]

(단위: %)

소득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1분위	54.0	12.4	27.7	1.5	4.4
2분위	47.8	21.5	28.1	1	1.6
3분위	60.1	26.3	11.2	0.5	1.9
4분위	65.3	26.7	6.0	0.4	1.6
5분위	72.7	24.2	1.5	0.3	1.3
전체	60.0	22.2	14.9	0.7	2.2

주: 사글세 또는 연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함.

자료: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2.26..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종합주택 평균 월세 가격은 2026년 6월 기준 101.6으로(2026년 1월=100),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평균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주택 평균 월세통합가격지수]

2021.12.	2022.12.	2023.12.	2024.12.	2025.12.	2026.1.	2026.6.
97.04	97.97	97.16	98.32	99.74	100.0	101.6

주: 2026.1.=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 이로 인한 전·월세시장 불안정 및 월세가격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월세 거주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12%에서 15~17%로 상향조정(2022년 세법개정)되고, 세액공제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2023년 세법개정)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현행 세액공제율 수준은 다른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⁶⁾이므로 공제율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⁷⁾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하여서는, 동 세액공제 적용자의 공제 대상 월세액이 평균 280만원 수준이고, 연간 1,000만원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⁸⁾한 바, 추가적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과,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 및 월세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제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2027~2031년 5년간 총 1조 6,875억원(연평균 3,3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6) (보험료) 12% (의료비) 15% (교육비) 15% (연금계좌) 15%

7) 재정경제부 의견임

8) 2024년 기준 전체 우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 874,636명 중 15,091명(1.7%) (자료: 재정경제부)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월세 세액공제 확대 (안 제95조의2)	△2,489	△2,869	△3,308	△3,813	△4,396	△16,875	△3,3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정점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3 신설) ○ (공제대상자) - <u>총급여 9천만원(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근로자</u> - <u>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세대의 세대주</u>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 ○ (공제율) 임차주택 관리비의 20% 또는 22%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일반 공제대상자</td><td>20%</td></tr> <tr> <td>총급여액 6천 500만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이 5천 500만원 이하)</td><td>22%</td></tr> </tbody> </table> ○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추가로 공제 가능 ○ 시행일: 공포한 날	공제율		일반 공제대상자	20%	총급여액 6천 500만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이 5천 500만원 이하)	22%
공제율							
일반 공제대상자	20%						
총급여액 6천 500만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이 5천 500만원 이하)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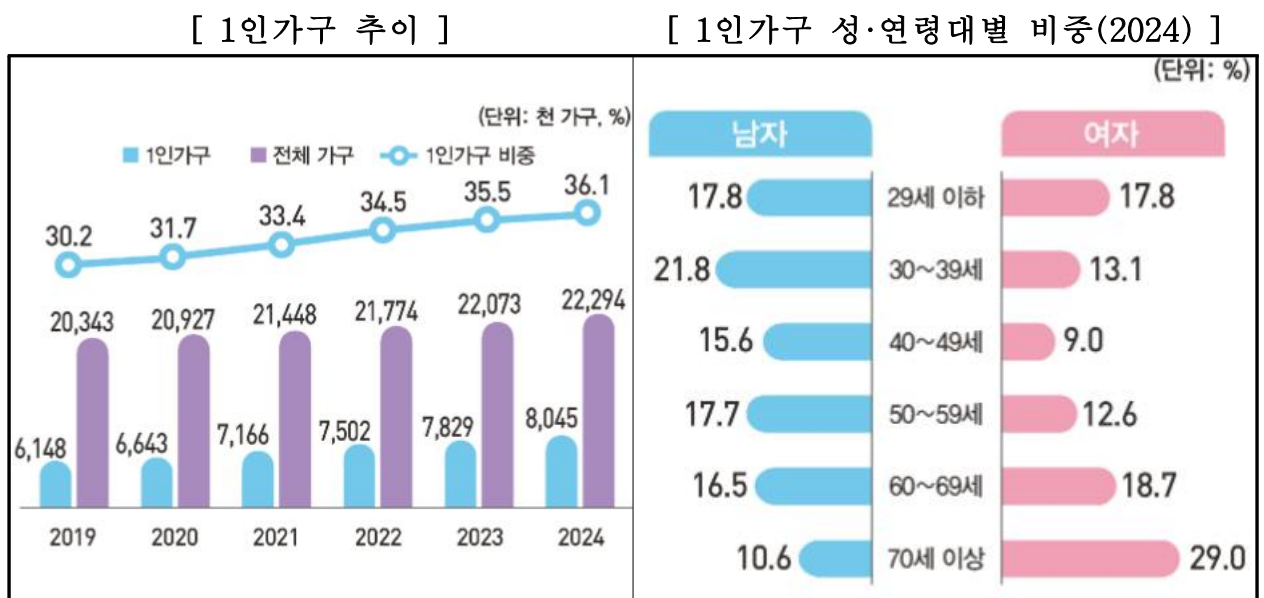
* 정점식의원안 2026. 4. 3. 발의 (의안번호 18081)

□ 개정안은 현재 기(既)운영중인 월세액 세액공제와 더불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1인 가구 비중의 확대로 인해 주택 안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월세와 비슷한 형태로 매월 납부되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현행 규정은 주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월세와 그 지급방식 및 성격이 유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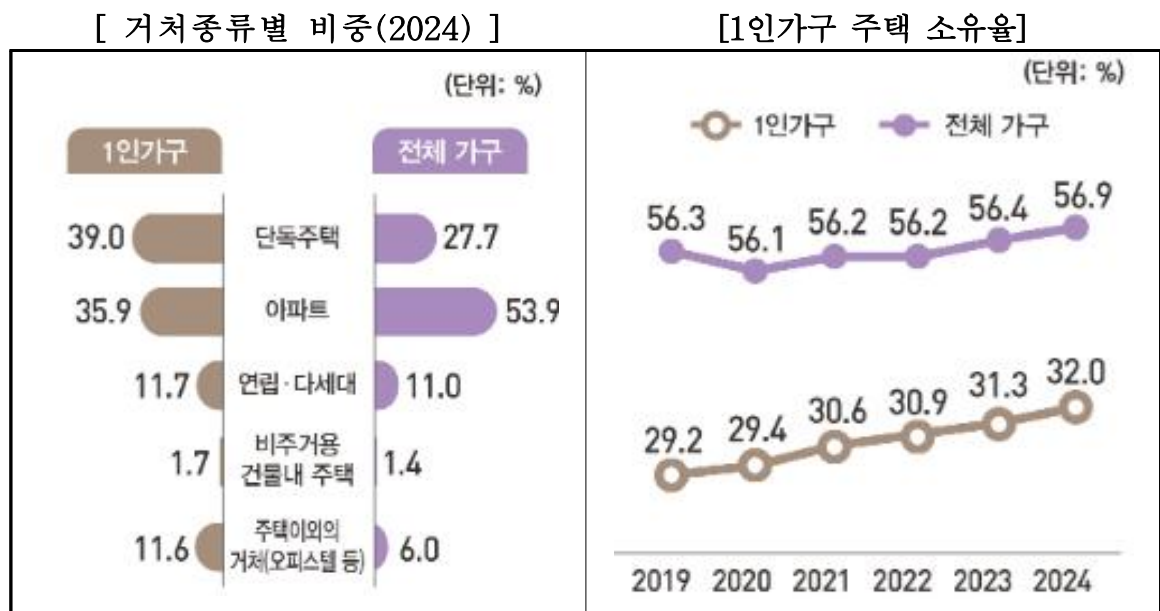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의 변화 및 청년 취업 심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⁹⁾.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5.12.9.

9) 2023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인 782만 9천가구로,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가 전체의 19.1%, 2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18.6%임. 「2024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4.12.9

2024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인 804만 5,000가구로,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 및 2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 중이며, 전체 가구에 비해 주택 소유율이 낮은 편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5.12.9.

이처럼 1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룸 등 1인 가구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부담률은 높아지고 있음.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의 2025년도 원룸 평균 관리비는 2022년 대비 28% 상승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¹⁰⁾

10)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청년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대선 후보들 내놓은 공약 보니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월세액과 유사하게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1인 가구 등 주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달리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동일한 주택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두 과세대상자가 월세액 및 관리비의 비율에 따라 받게 되는 세제혜택의 규모가 상이해질 수 있음.¹¹⁾

둘째, 개정안은 관리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채 포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등의 공용관리비, 전기요금·수도요금·난방비 등의 이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전통적 성격의 관리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 및 사용료, 구내식당 이용료 등 신설되는 항목이 많아 그 범위가 넓고, 관리비에 포함된 각각의 항목에 따라 그 성격이 상이하며, 주거시설별로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달리 정하고 있어 세제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액공제

11) 일례로, 월세액이 공제한도인 1,500만원이고 관리비가 500만원인 주택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인의 세제공제 혜택의 확대를 위해 월세액을 1,000만원 관리비를 1,0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임대인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조세 지출규모는 확대될수 있음. 또한

대상이 되는 관리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역진적 세제 혜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개정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만약 동 규정을 ‘관리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에서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관리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에 대한 별도의 가격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고가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월세 대비 높은 비율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고소득 과세자가, 저가 주택 거주자보다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하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존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비를 세제 지원에 포함할 경우 지원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재정경제부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기존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주거비에 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청소, 경비, 수선, 난방, 냉방 비용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지원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임.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관리비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2027~2031년 5년간 총 3조 9,235억원(연평균 7,8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안 제95조의3)	△7,275	△7,549	△7,836	△8,133	△8,442	△39,235	△7,8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